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 윤종오·조 국·정혜경

전종덕 • 박은정 • 차규근

김용민 · 신장식 · 황운하

용혜인 • 고민정 • 김재원

정춘생 • 민형배 • 김성환

서미화 · 김우영 · 김종민

김영호 · 안태준 · 김영배

한창민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뇌물수수 등 권력을 위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음. 민주화 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음.

그러나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여전히 867억원이 환수되지 못했음. 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나기도 했음. 해당자금은 현행법으로는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실정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처럼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못하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이라 해도 몰수나 추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이에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명과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및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

법률 제 호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배제 등에"를 "배제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몰수 등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물건, 금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에 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각행위로 얻은 재산(이하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이라 한다)은 행위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범죄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그 밖의 자로부터 몰

수 또는 추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국가의 범죄수익 조사 및 몰수 의무) 국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자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하여 그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등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 제1조(목적) -----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 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 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 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제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몰수 등에----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 다. <신 설> 제5조(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 죄수익에 대한 몰수 등) 헌정 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물건, 금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 산 또는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 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 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각 행위로 얻은 재산(이하 "헌 <신 설>

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 익"이라 한다)은 행위자의 사 망,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범죄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그 밖의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6조(국가의 범죄수익 조사 및 몰수 의무) 국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하여 그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